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68 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강일・김문수・김남희

정준호 · 김남근 · 김현정

염태영 • 황운하 • 민병덕

박정현 • 황명선 • 김우영

이용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 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.

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 총장,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7759호) 및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6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한국은행 총재"를 "육군참모총장·해군참모총장·공군 참모총장·한국은행 총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· ② (생 략)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・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・국무위원・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정보 원장 ·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·금융위원회 위원장·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 ·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・국세청장・검찰 총장 · 경찰청장 · 합동참모의장 -----<u>육군참</u>모총장·해군 · 한국은행 총재·특별감찰관 참모총장 · 공군참모총장 · 한국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(이하 은행 총재-----"헌법재판소재판관등"이라 한 다)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· 대통령당 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

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	
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